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1181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21. 4. 8.

판결 선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880,431원과 그중 7,439,221원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4.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4. 22. 접수 제11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출

피고 A은 2019. 5. 20.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3,576,200원, 보증기한 2021.5. 1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 하에 C조합에서 15,972,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그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내지 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9%이다.

(2) 원고의 대위변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9. 18. C조합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7,439,221원(1)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명목으로 441,210원(2)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재산 처분행위

(1) 피고 A은 2020. 4. 22.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73,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고, 같은 날 피고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90,800,000원, 채무자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2020. 4. 22.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159,000,000원이다.

(3) 2020. 4. 22. 피고 A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였다.

계산		내역	금액(단위: 원)
적극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280,000,000
	2	논산시 E 주차장 222㎡ 중 1/4지분	33,300,000
소극재산	1	이 사건 대출금채무	-7,353,000
	2	F 조합	-110,890,000
	3	G	-16,000,000
	4	주식회사 D	-159,000,000
	5	가압류채무(H)	-74,000,000
	6	가압류채무(I 주식회사)	-50,098,000
	7	가압류채무(J 주식회사)	-41,580,000
	8	가압류채무(K)	-84,448,254
		합계	-280,067,254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 옥천군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등 7,880,431원(= 1 + 2)과

그중7,439,221원(1)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A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9. 8. 22. 30,000,000원, 2019. 8. 23. 26,000,000원 합계 56,000,000원을 6개월 후 6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송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시가 203,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59,000,000원을 제하면 매매대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면 되었는데, 이를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나 제3, 4, 5호증에 의하면, 피고 B이 2019. 8. 22. 및 2019. 8. 23. 피고 A에게 합계 5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A은 2019. 8. 23. 피고 B에게 차용증 및 각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2019. 8. 22. 자신의 계좌로 56,000,000원을 현금 입금 받은 전후에 걸쳐 이 금액 전부를 피고 A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피고 B은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